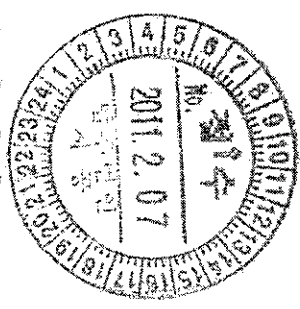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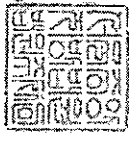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본입니다.

판 결

2011. 2. 1.

법원주사 정 전



사 건 2010가소5175668 보험금
원 고 주식회사 아미존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7-3 삼환까뮤빌딩 802호
대표이사 조성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공 담당변호사 이승민

피 고 1.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서울 중구 을지로1가 87 삼성화재빌딩

대표이사 지대섭

지배인 이준형

2.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1-10 동부금융센터

대표이사 김정남

3.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인의동 112-1 한국교직원공제회 동원회관

대표이사 송면섭

소송대리인 백제환

변 론 종 결 2011. 1. 13.

판 결 선 고 2011. 1. 27.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617,000원 및 그 중 363,840원에 대하여

2009. 11. 25.부터, 나머지 금액(253,160원)에 대하여 2010. 4. 16.부터,
- 나.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87,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11.부터, 다. 피고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는 145,2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20.부터, 각 2011. 1.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값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 (1)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630,360원과 그 중 388,600원에 대하여 2009. 11. 25.부터, 241,760원에 대하여 2010. 4. 16.부터,
- (2)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98,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 11.부터,
- (3) 피고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는 157,64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3. 20.부터, 각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값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단기렌트 평균가격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그랜저TG(1~2일)	로체(3일)	토스카(1일)
금호렌터카	242,000	112,000	136,000
이주렌터카	242,000	122,400	122,400
하이렌터카	191,000	105,000	-
동부렌터카	208,000	99,900	111,000
우리렌터카	210,100	114,300	127,000

평균 신고요금	218,620	110,720	124,100
---------	---------	---------	---------

2.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다.

- (1) 삼성화재 617,000원: 그랜저TG 363,840원(2일 평균요금 437,240원 - 기지급금 73,400원) + 로체 253,160원(3일 평균요금 332,160원 - 기지급금 79,000원)
- (2) 동부화재 87,100원: 토스카 1일 평균요금 124,100원 - 기지급금 37,000원
- (3) 더케이 145,260원: 그랜저TG 1일 평균요금 218,620원 - 기지급금 73,360원

판사 판부규 _____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9 민 사 부

판 결

사 전 2011나10012 보험금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아마존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7-3 삼환까무빌딩 802호

대표이사 조성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공

담당변호사 이충민, 김승아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서울 중구 을지로1가 87 삼성화재빌딩

대표이사 지대섭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명호, 이유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승욱

피고, 피항소인 1.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1-10 동부금융센터

대표이사 김정남

2.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인의동 112-1 한국교직원공제회 동원회관

대표이사 송면섭

제 1 심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27. 선고 2010가소5175668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1. 30.

판 결 선 고 2011. 12. 28.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원고에게 605,600원 및 그 중 363,840원에 대하여는 2009. 11. 25.부터, 241,760원에 대하여는 2010. 4. 16.부터, 각 2011. 12. 28.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값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의 피고 등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더케이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가.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630,360원과 그 중 388,600원에 대하여 2009. 11. 25.부터, 241,760원에 대하여 2010. 4. 16.부터, 나.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98,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 11.부터, 다. 피고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는 157,64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3. 20.부터, 각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13,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25.부터,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11,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11.부터, 피고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는 12,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20.부터, 각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원고에게 362,759원 및 그 중 220,800원에 대하여는 2009. 11. 25.부터, 141,959원에 대하여는 2010. 4. 16.부터 각 2011. 1.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차량 대여업체(렌터카 업체)로서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이용고객들과 사이에 차량대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대여계약'이라 한다).

순번	일시	이용고객	대여기간	대여차량의 차종(번호)
1	2009. 7. 1.	임현규(일영 인스트루먼트)	2009. 7. 9. ~ 2012. 7. 8.	그랜저Q270 렌터카모범형 PACK-1(46㉮8015)
2	2009. 9. 17.	장덕홍(신진 씨엔테크)	2009. 9. 21. ~ 2012. 9. 20.	2010로체렌터카LPI LX2.0최고급스페셜A/T (46㉮8180)
3	2009. 8. 4.	배철훈(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2009. 8. 12. ~ 2012. 8. 11.	토스카영업용렌터카L6 2.0.디럭스A/T(46㉮8088)
4	2009. 8. 25.	박소영(빅엔라인)	2009. 8. 26. ~ 2012. 8. 25.	그랜저TGQ270 PACK2 LPG A/T(46㉮8139)

나. 이 사건 각 대여계약에 따르면, 위 이용고객들이 각 대여차량을 이용하는 도중 상대방의 과실로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를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원고가 별도로 대차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각 대여계약의 이용고객들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각 대여차량을 이용하던 도중 상대방의 과실로 각 대여차량이 파손되는 사고를 당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각 사고'라 한다), 위 이용고객들은 각 대여차량의 수리기간 동안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원고로부터 대차를 제공받아 이용하였다(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대여계약에서 는 이용고객들이 사고 피해자가 되는 경우 원고가 대차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대차 제공은 이 사건 각 대여계약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이 와는 별개의 대여계약에 따른 것이다. 이하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삼성화재',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동부화재', '피고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더케이보험'이라 한다).

순번	피해차량(대여차량)	사고일	가해차량의 보험회사	대차의 차종(번호)
1	그랜저Q270렌터카모범형 PACK-1(46히8015)	2009. 11. 20.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그랜저TG LPI 렌트카모범형PACK2 (47히5202)
2	2010로체렌터카LPI LX2.0최고급스페셜A/T (46히8180)	2010. 4. 12.	"	NF소나타LPG트랜스 N20렌터카고급형 (38히8984)
3	토스카영업용렌터카L6 2.0.디럭스A/T(46히8088)	2010. 1. 7.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NF소나타(47히5347)
4	그랜저TGQ270 PACK2 LPG A/T(46히8139)	2010. 3. 18.	피고 더케이순해보험 주식회사	그랜저TG LPI Q270 원발장애(S2) (서울38히9998)

라. 원고는, 위 이용고객들에게 위와 같은 대차를 제공한 후 가해차량의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위 대차비용 상당의 금액을 청구하였는데(차량이용자가 사고를 당하여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 원고와 같은 차량대여업체들이 차량이용자에게 대차를 제공한 후 그 차량이용자로부터 대차료를 직접 지급받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가해차량의 보험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고 그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가해차량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직접 대차료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에 있어서도 원고는 위와 같은 방법에 따라 피고들에 대하여 직접 대차료 상당의 보험금 지급을 구하고 있다), 보험회사들은 그 중 일부의 금액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순번	대차의 차종(번호)	대차비용(청구금액)	보험회사의 지급금액	지급일자	차액
1	그랜저TG LPI 렌트카모범형PACK2 (47히5202)	462,000원(1일 231,000원×2일)	피고, 삼성화재 73,400원	2009. 11. 25.	388,600원
2	NF소나타LPG트랜스 폼 N20렌터카고급형 (38히8984)	320,760원(1일 106,920원×3일)	피고, 삼성화재 79,000원	2010. 4. 15.	241,760원

3	NF소나타(47회5347)	129,800원(1일)	피고 동부화재 37,000원	2010. 1. 12.	92,800원
4	그랜저TG LPI Q270 원발장애(S2) (서울38회9998)	231,000원(1일)	피고 더케이보험 73,360원	2010. 3. 23.	157,640원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대여계약의 이용고객들로부터 이 사건 각 사고로 발생한 피고들에 대한 각 보험금청구채권을 양수받고, 위 이용고객들로부터 채권양도통지에 관한 권한까지 위임받은 후, 위 보험금청구채권의 양도통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 2011. 10. 25.자 준비서면을 피고들에게 송달함으로써 피고들에 대하여 위 보험금청구채권의 양도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내지 9, 13, 14, 16, 17호증, 을 제1, 2호 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사고 가해차량의 보험회사인 피고들이 위 각 사고로 인한 피해자인 이 사건 각 대여차량의 이용고객들에게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위 이용고객들이 위 각 대여차량의 수리기간 동안 동종 또는 유사한 종류의 대차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대차료 상당액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들은 원고가 위와 같이 청구한 대차비용(청구금액)과 피고들이 실제 지급한 차액[피고 삼성화재 630,360원(388,600원+241,760원), 피고 동부화재 98,200원(앞서 기재된 표의 '차액' 기재에 비취 이는 92,800원의 오기로 보인다), 피고 더케이보험 157,640원] 상당의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사고의 피해차량인 이 사건 각 대여차량은 각 보험약관 소정의 '사업용 자동차'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사고 가해차량의 보험회사인 피고들이 위 각 사고로 인하여 부담하는 손해액은 '대차료' 상당액이 아닌 '휴차료' 상당액이라 할 것이고, 설사 위 손해액을 '휴차료'가 아닌 '대차료' 상당액이라고 보더라도, 피고들이 부담하는 손해액은 원고(또는 이 사건 각 대여차량의 이용고객들)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 전부가 아니라 '통상의 손해액' 범위 내의 금액이라 할 것이다.

또한, 통상의 손해액 범위는 원고가 실제로 대차로 제공한 차량의 휴차료(또는 대차료)가 아니라 애초에 대여되었던 차량(사고발생차량)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그 비용도 업계의 관행에 따라 고시가격에서 30% 내지 40% 할인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피고들의 부담하는 손해배상액이 '휴차료' 상당액인지, '대차료' 상당액인지 여부 먼저, 피고들이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이 '휴차료' 상당액인지, '대차료' 상당액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각 대여계약에 따르면 위 각 이용고객이 각 대여차량을 이용하는 도중 상대방의 과실로 사고를 당하게 되는 경우 원고가 별도로 대차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는 것으로 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음바, 그렇다면 위 이용고객들로서는 위 각 대여차량의 수리기간 동안 별도로 차량을 대여받아야 하므로 결국 이 사건 각 사고로 인하여 원래의 각 대여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발생 하는 손해를 입게 되는 피해자는 위 각 대여차량의 소유자인 원고가 아니라 위 이용고객들이라고 할 것이고(위 수리기간 동안에도 원고는 위 이용고객들로부터 변함없이 원래의 각 대여계약에 따른 각 차량대여료를 지급받은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원고에게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고, 이용고객들이 별도로 차량을 대여받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손해가 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원고가 이용고객에 대한 편의제공 차원에서 이용고객이 별도 차량을 대여하는 대신 원고의 차량을 대차해 주고 이용고객을 대신하여 이용고객의 보험금청구권을 양수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갑 제5호증의 1, 3, 4와 각 기계에 의하면 피고들의 각 자동차보험약관에는 그 지급대상에 있어 '대차료'는 '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비용'으로, '후차료'는 '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로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위와 같은 각 자동차보험약관의 규정취지(사업용의 의미 및 대상 포함), 이 사건 각 사고로 인하여 위 각 대여차량을 이용하여 못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의 성격 및 그 피해주체, 이 사건 각 대여계약의 내용 등에 비춰보면, 결국 이 사건 각 사고 가해차량의 보험회사인 피고들이 위 각 사고로 인하여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은 '후차료'가 아닌 위 이용고객들이 지출한(실제로는 위 이용고객들을 위하여 원고가 지출한) '대차료' 상당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들이 지급하여야 할 손해액의 구체적 액수

나아가,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차료의 구체적 액수에 관하여 살펴건대, 자동차정비업자가 보험가입차량 등을 정비하고 차주들로부터 보험사업자 등에 대한 보험금청구권 내지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아 보험사업자 등에게 정비용금을 청구하는 경우, 당해 정비작업이 필요한 것이어야 함은 물론 나아가 그 정비용금의 액수 또한 상당한 것이어야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507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범위 및 손해배상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차료는, 이 사건 각 대여차량과 동일한 종류의 차량을 대여하는 것이 곤란하다는(동일한 종류가 아니라 유사한 종류의 다른 차량을 대차할 수밖에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로체, 토스카 대신 소나타를 대차할 수밖에 없었던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 사건 각 대여차량과 동종의 차량을 임차하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대차료 상당액을 한도로 하여 실제로 지출된 대차료 상당액이라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1, 1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당시의 Kt금융렌터카(주식회사 케이티렌탈)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주요 차량대여업체(렌터카업체)들이 정하고 있는 이 사건 각 대여차량과 동종차량에 대한 1일 대여료 및 그 평균요금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순번	업체명	그랜저TG (대여기간 1~2일)	로체(대여기간 3일)	토스카(대여기간 1일)
1	금호렌터카	242,000원	112,000원	136,000원
2	이주렌터카	242,000원	122,400원	122,400원
3	하이렌터카	191,000원	105,000원	-
4	동부렌터카	208,000원	99,900원	111,000원
5	우리렌터카	210,100원	114,300원	127,000원
평균 요금		218,620원(1일)	110,720원(1일)	124,100원(1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사고로 인하여 피고들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액은 피고 삼성화제가 758,000원[437,240원(그랜저TG 평균요금 218,620원×2일)+320,760원(로체의 3일간 평균요금은 332,160원이 되나, 원고가 실제로 차량을 제공한 후 피고 삼성화제에 청구한 금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320,760원이므로, 원고가 청구한 위 금

액을 기준으로 한다)], 피고 동부화재가 124,100원(토스카 평균요금, 1일), 피고 더케이 보험이 218,620원(그랜저TG 평균요금, 1일)이 되므로, 결국 피고들이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은 피고 삼성화재가 605,600원[손해배상액 758,000원(437,240원+320,760원) - 기지급액 152,400원(73,400원+79,000원)], 피고 동부화재가 87,100원(손해배상액 124,100원-기지급액 37,000원), 피고 더케이보험이 145,260원(손해배상액 218,620원 - 기지급액 73,360원)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삼성화재는, 통상의 손해액 범위는 위와 같은 업체의 고시 요금을 그대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일반인이란면 누구든지 그 자격의 제한 없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즉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30% 내지 40% 할인된 요금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할인된 요금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회원가입이라는 절차가 필요한 점(이용자들에 따라서는 절차상의 번거로움, 개인정보 요구 등의 사유로 인하여 회원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위와 같은 할인요금은 어디까지나 업체마다 실시 여부, 규모와 시기 등이 유동적인 판매전략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춰보면 통상의 손해액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업체의 할인된 요금이 아니라 고시 요금을 적용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을 제3 내지 7, 9호중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단으로는 고시요금에서 30% 내지 40% 할인된 요금이 통상적인 대차비용이라는 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결국 피고 삼성화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삼성화재는 605,600원 및 그 중 363,840원(437,240원-73,400원)에 대하여는 차량(46히8015호)의 사고발생으로 인하여 원고가 대차를 제공

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9. 11. 25.부터, 나머지 241,760원(320,760원-79,000원)에 대하여는 차량(46히8180호)의 사고발생으로 인하여 원고가 대차를 제공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0. 4. 16.부터, 각 위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법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시 판결 선고일인 2011. 12.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동부화재는 87,100원 및 이에 대하여 차량(46히8088호)의 사고발생으로 인하여 원고가 대차를 제공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0. 1. 11.부터, 피고 더케이보험은 145,260원 및 이에 대하여 차량(46히8139호)의 사고발생으로 인하여 원고가 대차를 제공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0. 3. 20.부터, 위 각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법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1. 1. 27.까지는 각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삼성화재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삼성화재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 삼성화재에 대하여 위 인정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동부화재와 더케이보험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 삼성화재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승준

판사

당우증

판사

이원근